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청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처벌과 양벌규정 위주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조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문의 내용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예산 등 향후 5년간 총 3억4천6백8십만원이며,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할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안전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관리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10. 6. ~ 10. 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3년 10월 기준 3개 시도에서(경기·인천·경남)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 시설현황 : 475개소(건축물 42, 공중이용시설 419, 원료·제조물 14)

① 건축 시설(시행령 별표2)

소 관 부 서		시 설 현 황		비고
		시 설 명	연면적(m ²)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6,031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2. 충북연구원	5,437	
	예산담당관	3. 충북개발공사	3,130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10,043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5. 청주SB플라자	10,839	
		6. 충북테크노파크	69,218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2,493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8.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570	
	장애인복지과	9. 충북곰두리체육관	3,814	
		10.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3,187	
	보건정책과	11. 청주의료원	44,236	
		12. 충주의료원	33,900	
13. 충북노인전문병원		3,558		
바이오 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	14. C&V센터	20,338	
	첨단바이오과	15.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4,201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16. 충북문화예술인회관	3,502	
		17. 충북문화재연구원	2,058	
	체육진흥과	18. 충북체육회관(스포츠센터 포함)	15,981	
농 정 국	청남대관리사업소	19. 청남대	13,802	
	동물위생시험소	20.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12,726	
		21. 농산사업소	4,295	
	내수면산업 연구소	22. 내수면산업과(충주)	7,352	
		23. 내수면산업과(괴산)	9,792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24. 남부내수면지원과(옥천)	3,239	
		25.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2,030	
		26.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2,243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27.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2,224	
		28. 미동산수목원	11,065	
행 정 국	회계과	29. 조령산자연휴양림	4,288	
		30. 도분청 청사	32,482	
소방본부	소방본부 청사	31. 소방본부 청사	4,230	
	각 소방서 8개소	32.~39. 동부, 서부, 충주, 제천, 영동, 진천, 음성, 증평	3천m ² 이상 시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40. 농업기술원 청사	28,969	
	포도연구소	41. 청사 및 포도시험장	2,202	
	마늘연구소	42. 청사 및 마늘시험장	3,695	

② 토목시설(시행령 별표3)

(단위:개소)

구 분	시설물 유형	도로관리사업소			
		계	본소	북부	남부
합 계		419	158	119	142
교 량	소 계	351	136	97	118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3	1	2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37	15	8	14
	연장 100m 이상 교량	89	38	22	29
	폭 6m이상이고, 연장 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	-	-
	연장 20m 이상 중 준공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222	82	65	75
터 널	소 계	14	5	6	3
	연장 1,000m 이상 터널	1	1	-	-
	3차로 이상 터널	-	-	-	-
	터널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	1	1	-	-
	일반(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터널(연장 무관)	2	1	1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터널	10	2	5	3
옹 벽	노출 높이 5m 이상, L=100m 이상인 옹벽	14	10	3	1
절 토 사 면	연직높이 30m 이상,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 절토사면	40	7	13	20

③ 원료 및 제조물 시설(시행령 별표5)

연번	소관부서	시설명(구내식당)	식당 운영방식	이용인원 (평균,명)	비고
계	14개소				
1	인사혁신과	충북도청	직영	360	
2	사무국	충북도립대학교	"	450	
3	행정지원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	200	
4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원	"	120	
5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미래여성플라자	"	50	
6	보건정책과	청주의료원	"	600	
7	보건정책과	충주의료원	"	800	
8	보건정책과	충북노인전문병원	"	315	
9	과학기술정책과	충북테크노파크	위탁운영	220	
10	과학기술정책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00	
11	복지정책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	50	
12	장애인복지과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	50	
13	바이오정책과	C&V센터	"	315	
14	체육진흥과	충청북도체육회관	"	15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구내식당 유형 신규 지정('23.2.6.)